

##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2. 자산운용회사명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모두자신탁의 :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츠 브라질 법인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RANKLIN TEMPLETON INVESTIMENTOS (BRASIL) LTDA)

### 3. 판매회사명:

한국씨티은행	1588-5753	외환은행	1544-3000
하나은행	1588-1111	대신증권	1588-4488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02-3707-0400		
서울지점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성기준일 : 2008. 05. 16

####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의 본, 지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

## 목 차

핵심투자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6. 최초설정일 등 연혁
7. 수탁고 추이
8. 해지사유
9. 당해 투자신탁의 모자구조

###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IV.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 II. 자산의 평가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IV. 매입 · 환매 및 분배 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 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p.1

1. 명칭 :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79277)
2. 신탁계약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5.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츠 브라질 법인

## II. 투자정보 본문 p.1~7, p.10~14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로 브라질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모투자신탁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 추구.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투자신탁: 투자신탁 재산의 60%이상을 브라질 기업 주식에 투자</li> <li>2. 자투자신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외에는 모두 모투자신탁에 투자</li> <li>2) 펀드내 원/미달러 햇지거래는 수행하지 않습니다.</li> </ol> </li> </ol> <p>*모투자신탁에 대한 사항은 본문 제 2 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3. 주요투자위험	<b>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금리, 주가,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따라 <b>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b>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b>7 등급</b> 중 <b>1 등급</b> 에 해당되는 <b>매우 높은</b>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동투자신탁 제외)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김동일	1962년생	CIO	97개	32,704 억원	삼성생명(1987-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틴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담당이사(2001-현재)
유재홍	1970년생	부장	97개	32,704 억원	동원투자신탁운용(1998-2002) 당사 채권운용팀(2002-현재)

\* 모펀드의 운용은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츠 브라질 법인의 펀드매니저 **Frederico Sampaio** 가 총괄합니다.

### 7. 투자실적추이 | 해당사항 없음

##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본문 p.7~9, p.16~17

###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Class A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I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X	판매사 인터넷 뱅킹	최초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 법인 4. 간접투자기구 5. 판매사 랩어카운트 6. 판매사 특정금전신탁				
수익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1.00%(매입시)	없음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이익금의 30%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90%								
판매회사 보수	연 1.20%	연 1.70%	연 1.36%	연 0.10%	연 0.03%				
수탁회사 보수	연 0.05%								
일반 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								
기타비용 <sup>1)</sup>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총 보수·비용 비율</b>	연 2.18%+실비	연 2.68%+실비	연 2.34%+실비	연 1.08%+실비	연 1.01%+실비				

- 1) 기타비용은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 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비율 등을 추정치로 사용하나, 작성일 현재 신규상품인 관계로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2) 모투자신탁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 (**2009년 12월 31일 까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받는 국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은 국내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년 12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 절차 등:**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 – 오후 시)중 매입·환매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 시 이전	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1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 [투자설명서 본문]

###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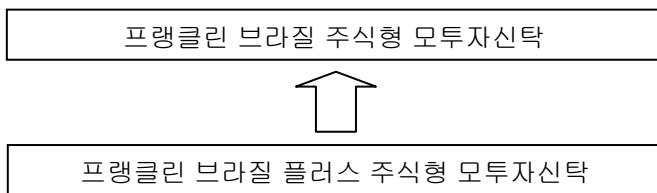
####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펀드 코드 : 79277)
- 2. 신탁계약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 3. 분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의 자투자신탁
- 4. 자산운용회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 5.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츠 브라질 법인 (FRANKLIN TEMPLETON INVESTIMENTOS (BRASIL) LTDA)  
업무위탁범위 : 모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단, 업무위탁에 대한 책임은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에 있습니다.
- 6.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8년 3월 3일 최초설정  
2008년 5월 16일 약관변경: Class I 및 Class F 판매기준 변경
- 7. 수탁고 추이** 해당사항 없음
- 8.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9. 당해 투자신탁의 모자구조



####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브라질 기업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

##### (1)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기업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 투자전략** 브라질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펀드에 투자, 원-달러 환헤지 실행하지 않음

#####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외에는 모두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2) 당해 투자신탁의 환위험 전략

###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가. 『프랭클린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브라질 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체계적인 리서치 분석에 근거하여 꾸준히 **벤치마크를 outperform**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벤치마크:** MSCI Brazil (KRW Based)

**브라질 기업** 이란 :

1) 브라질의 법에 의해 설립된, 또는 브라질에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회사, 또는 2) 주요 수익 내지 자산이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회사

나. 일정한 스타일이나 Market Cap에 Bias를 두지 않고 심도깊은 펀더멘탈 리서치에 근거하여 투자합니다.

다.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 부분은 브라질 시장에 정통한 프랭클린템플턴 그룹의 현지 법인인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츠 브라질 법인 (FRANKLIN TEMPLETON INVESTIMENTOS (BRASIL) LTDA)가 운용 업무위탁을 받아 운용할 예정입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주요 투자위험

### (1)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 신종 시장의 위험(가격변동 위험을 포함)

일반적으로 신종 시장은 선진국 시장보다 투자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종 시장의 투자 관련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 감사, 재무 정보 보고·공시 관련 기준이나 제도가 국제기준에 미달하여 투자 대상 기업을 조사하고 투자 결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제도, 정부의 직·간접 규제와 간섭 등이 국제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변화가 심하여, 특정 기업과 산업의 주가, 또는 보다 광범위한 기업들의 주가에 예상치 못한 변동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신종 시장 국가의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투자자산 몰수, 세금징수, 거래중지 또는 제한, 외국환 규제, 기타 예상치 못한 제제 등 투자 자산의 직접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나 물가, 환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더 낮을 수 있어 주가의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 기반 자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해외 경제변수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부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불확실성이 큰 점 또한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나. 환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해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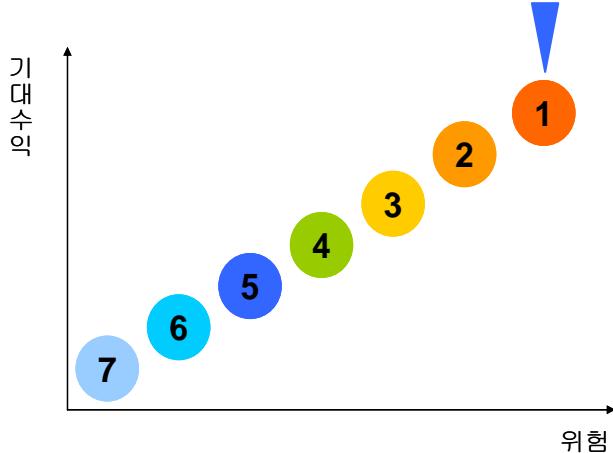
이러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브라질 기업 주식에 투자되며 환위험에 노출되므로 **7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투자펀드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 중에서도 신흥시장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위험등급	위험 수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 등급	매우높음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2 등급	높음	프랭클린 내츄럴 리소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3 등급	비교적 높음	템플턴 글로벌 벨런스드 혼합형 투자신탁-자(A),(E),(I)
4 등급	중간	템플턴 장기주택마련 혼합 투자신탁 1호
5 등급	비교적 낮음	-
6 등급	낮음	템플턴 골드 채권 종류형 투자신탁
7 등급	매우 낮음	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투자신탁 A-1 호

위 위험등급은 당사가 조사한 예상 수익률 변동성 등의 자료를 기초로 오직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수익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수익증권 종류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매일 산정하여 산정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에 통보
기준가격 공시시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프랭클린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표시통화: KRW)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6. 책임운용전문인력

### (1) 동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07년 9월 30일 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동투자신탁 제외)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김동일	1962년생	CIO	97개	32,704 억원	삼성생명(1987~1996) 삼성특신운용(1996~1999)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틴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담당이사(2001~현재)
유재홍	1970년생	부장	97개	32,704 억원	동원투자신탁운용(1998~2002)

### (2)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인력

(2007년 12월 31일 현재)

성명	소속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Frederico Sampaio	Franklin Templeton Investimentos (Brasil) Ltda.	Head of Equities	USD123.34mil	14년의 운용경력 (Rio Bravo Investimentos, Fundação Petros 등)

\* 상기인이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을 총괄합니다.

## 7. 투자실적

해당사항 없음.

## III. 수수료·보수, 과세

###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매입시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30 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시, 이익금의 30% -Class A 수익증권 외 나머지: 90 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	--	-----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 투자신탁 관련 보수

	Class A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I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구분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X	판매사 인터넷 뱅킹	최초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 법인 4. 간접투자기구 5. 판매사 랩어카운트 6. 판매사 특정금전신탁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90%				
판매회사 보수	연 1.20%	연 1.70%	연 1.36%	연 0.10%	연 0.03%
수탁회사 보수			연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		
기타비용 <sup>1)</sup>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총 보수•비용 비율</b>	<b>연 2.18%+실비</b>	<b>연 2.68%+실비</b>	<b>연 2.34%+실비</b>	<b>연 1.08%+실비</b>	<b>연 1.01%+실비</b>

1) 기타비용은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접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비율 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설명서 작성일 현재는 신규상품인 관계로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2) 모두자신탁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2) 기타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 ①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② 투자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⑨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비용
- 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나.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 ①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sup>1)</sup>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219,423	676,429	1,158,763	2,484,812

및 보수·비용	Class C 수익증권	271,819	833,698	1,420,804	3,006,501
	Class C-e 수익증권	237,707	731,600	1,251,197	2,671,596
	Class C-I 수익증권	110,351	344,036	596,165	1,317,025
	Class C-F 수익증권	103,232	322,072	558,517	1,236,224

### 환매시 Class C 와 Class A 비교표

	환매 시점	0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5년 경과	10년 경과
Class C	매수금액	10,000,000	10,263,677	10,491,562	10,724,507	10,962,624	11,206,029	12,506,555
	신탁보수		(271,819)	(549,674)	(833,698)	(1,124,028)	(1,420,804)	(3,006,501)
	순투자금액	<b>10,000,000</b>	<b>10,263,677</b>	<b>10,491,562</b>	<b>10,724,507</b>	<b>10,962,624</b>	<b>11,206,029</b>	<b>12,506,555</b>
Class A	매수금액	10,000,000	10,213,097	10,492,296	10,779,127	11,073,800	11,376,528	13,018,924
	선취판매수수료	99,010						
	신탁보수		(219,423)	(444,845)	(676,429)	(914,344)	(1,158,763)	(2,484,812)
	순투자금액	<b>9,900,990</b>	<b>10,213,097</b>	<b>10,492,296</b>	<b>10,779,127</b>	<b>11,073,800</b>	<b>11,376,528</b>	<b>13,018,924</b>
차이	순차액(C-A) <sup>2)</sup>	99,010	50,579	(734)	(54,620)	(111,176)	(170,500)	(512,370)

주 1)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Class C 투자시와 Class A 투자시의 순투자금액의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괄호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는 Class A 투자시의 순투자금액이 Class C 투자시의 순투자금액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utual Fund, Reits, ETF 등의 지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Paper Company(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 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because$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익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IV.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분배

###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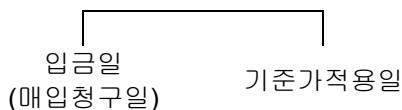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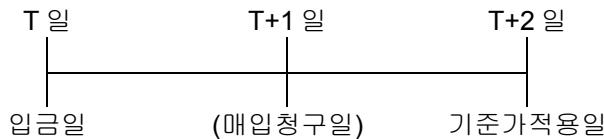
####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T 일	T+1 일
-----	-------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 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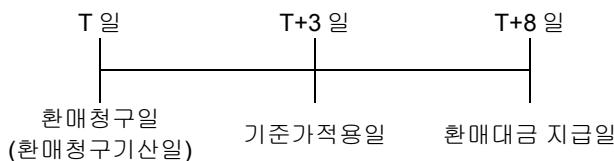
## 2.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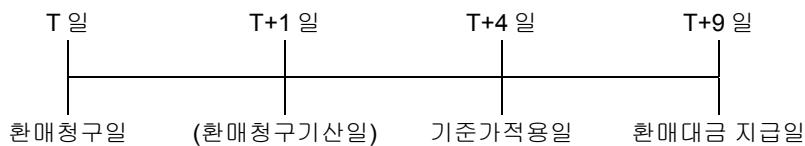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성이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당일 17 시(오후 5 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환매청구가 17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 (3)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1.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3. 90일 이상: 없음

[CLASS A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 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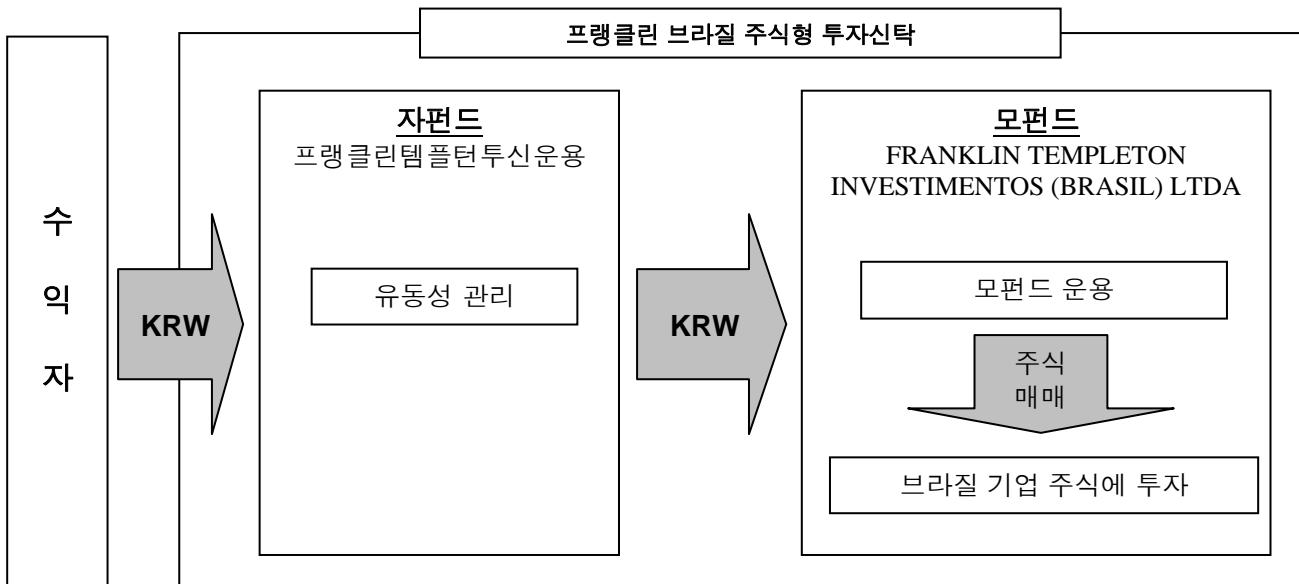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 투자전략



####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외에는 모두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2) 당해 투자신탁의 환위험 전략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가. 『프랭클린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브라질 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체계적인 리서치 분석에 근거하여 꾸준히 **벤치마크**를 **outperform**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벤치마크:** MSCI Brazil (KRW Based)

**브라질 기업** 이란 :

- 1) 브라질의 법에 의해 설립된, 또는 브라질에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회사, 또는 2) 주요 수익 내지 자산이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회사

나. 일정한 스타일이나 Market Cap에 Bias를 두지 않고 심도깊은 펀더멘탈 리서치에 근거하여 투자합니다.

다.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 부분은 브라질 시장에 정통한 프랭클린템플턴 그룹의 현지 법인인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츠 브라질 법인 (FRANKLIN TEMPLETON INVESTIMENTOS (BRASIL) LTDA)**가 운용 업무위탁을 받아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예상 투자종목 :** 투자가능 예상종목에 대한 예시이며, 실제 투자종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etrobras-Petrolio Brasileiro S.A.
Companhia Vale do Rio Doce
Banco Bradesco S.A.
Itausa-Investimentos Itau S.A.
Unibanco-Uniao de Bancos Brasileiros S.A.

## 2. 투자위험

### (1) 투자 위험

#### 가.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신풍시장 위험	여러 나라의 기관(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고, 여러 통화로 표시되는 유가증권들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는 특정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신풍 시장에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합니다. 가령, 포트폴리오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1) 투자 및 본국 송금 제한, (2) 환율변동, (3) 선진국 대비 비정상적 변동성을 보일 잠재성, (4) 민간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 (5) 제한적인 투자자 정보 및 엄격하지 않은 투자자 공시 요건, (6) 선진국 대비 덜 성숙되고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된 증권시장, 즉 펀드가 적정 가격으로 특정 증권을 때로 매도할 수 없는 가능성, (7) 특정 현지 세제상 고려사항, (8) 증권시장의 제한 규정, (9) 국제 및 지역적 정치경제 변동사항, (10) 외환 규제 또는 기타 현지 정부 법규나 규제 적용 가능성, (11) 디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위험 증가, (12) 펀드의 법적 청구 제한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은 국외 유가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환율 변동 위험	- 주로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해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펀드의 매수 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특성 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9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10 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대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절차에서 해외시장의 오퍼레이션 관행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제과정에서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환매일까지 국내투자보다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수익자가 종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브라질 시장 개황



구분	2003	2007E
인구 (단위: 백만명)	179	189
GDP (단위: 10 억불)	507	1,262
실질 GDP 성장률(%)	0.5	5.0
인플레이션 rate	9.3	3.6
금리(%)	12.9	8.1
외환보유고 (단위: 10 억불)	17	170
무역수지 (단위: 10 억불)	25	44

\*Source: Franklin Templeton Investimentos (Brasil) Ltda.

\*2007년 자료는 연말 예상치입니다.

## 3. 투자대상

### (1)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합니다.

- ① 아래 제②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프랭클린 브라질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약관 제 22 조 및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제①호 내지 제②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④호 및 ⑤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제①호 및 제②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모두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일반주식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 이하 "국내주식") 또는 국내 및 외국법인 등이 외국통화로 발행한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의 성질을 구비한 것 중 아래 제 2 호를 제외한 것(이하 "해외주식")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통칭하여 "일반 주식"이라 한다.)
2. 브라질 기업 주식	60% 이상	1) 브라질의 법에 의해 설립된, 또는 브라질에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회사가, 또는 2) 주요 수익 내지 자산이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이하 "브라질 기업 주식"이라 한다.)
3. 국내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4. 해외채권	40% 이하	법 제 2 조 제 7 호 다.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위 제 3 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5. 어음	35% 이하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법 제 2 조 제 7 호 다.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6.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법 제 2 조 제 7 호 다.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7.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8. 수익증권	5% 이하 단, ETF 는 30%까지 투자 가능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 또는 장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9. 투자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	
10.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의 15% 이하	법 제 2 조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 채권및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 (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1.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이하 (장내파생상품 포함)	법 제 2 조 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 채권및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3.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의한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4.	단기대출, 금융 기관 예치 및 이에 준하는 외화 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
15.	기타 사항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7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li> <li>나.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다.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li>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7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li> </ul>

#### 4. 투자제한

##### (1) 당해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 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2) 모투자신탁

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금 보증한 것에 한한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

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 3. (2). 제8호 내지 제13호 및 위 가.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은 위 3. (2) 10호 및 위 가. 제2호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II. 자산의 평가

###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의 최종시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 일 이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합니다) 평가기준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법 제 2 조 8 호에 규정된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법 시행규칙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 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외화표시증권에 적용되는

외화표시증권	환율을 결정함에 있어, 외화표시장주식 및 외화표시장채권에 적용되는 환율의 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화표시 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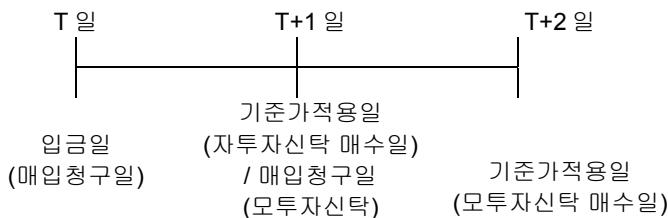
-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Value of Research)
-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1)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자투자신탁에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7 영업일 전의 날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8 영업일 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자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I.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번지 CCMM 빌딩 3 층 (대표전화 3774-0600)
회사연혁	1988년 3월: 쌍용투자자문회사 설립 1997년 2월: 프랭클린템플턴 그룹과 합자, 쌍용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7년 2월: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1999년 3월: 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0년 7월: 프랭클린템플턴 그룹이 회사지분전부인수 (100% 외국계 투신운용사가 됨) 2000년 9월: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 주요 업무

##### (1)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③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업무 위탁

###### 가. 간접투자재산의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A-Brain에 위탁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 164 조에서 정하는 업무중 기준가격산정업무를 **Abrain**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며 위탁의 책임은 자산운용회사에게 있습니다.

###### 나. 모두자신탁의 자산운용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장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를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츠 브라질 법인(Franklin Templeton Investmentos (Brasil) Ltda.)]("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라 합니다)에 위탁합니다.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개요]

회사명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os (Brasil) Ltda.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츠 브라질 법인
주소 및 연락처	CNPJ nº 04.205.311/0001-48 Rua Jerônimo da Veiga, 45 - 4º andar São Paulo-SP, 04536-000, Brasil

	Tel : 55 11 3077-3400
회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10월 브래드스코 템플턴 에셋 자산운용회사로 설립. 브라질 최대 상업은행인 방코 브래드스코 S.A 사와 합작한 Joint Venture 였으며 방코 브래드스코사가 합작회사의 소유통제권을 갖고 있음.</li> <li>- 프랭클린템플턴사가 2006년 1월 브래드스코 템플턴 에셋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소유통제권을 가지게 됨.</li> <li>- 2006년 5월 프랭클린템플턴사가 브래드스코 텁플턴 에셋 자산운용사의 단독 주주가 됨.</li> <li>- 2006년 7월 프랭클린 텁플턴 인베스트먼츠 브라질 법인로 상호변경.</li> </ul>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자산운용회사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 내용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2006.3.31	2007.3.31	항목	2006.3.31	2007.3.31
유동자산	36,063	40,388	영업수익	15,833	19,193
고정자산	4,513	3,811	영업비용	11,315	15,057
<b>자산총계</b>	<b>40,575</b>	<b>44,199</b>	영업이익	4,518	4,136
유동부채	3,551	4,068	영업외수익	213	298
고정부채	-	-	영업외비용	78	32
<b>부채총계</b>	<b>3,551</b>	<b>4,068</b>	경상이익	4,654	4,402
자본금	15,000	15,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22,025	25,131	특별손실	-	-
<b>자본총계</b>	<b>37,025</b>	<b>44,199</b>	당기순이익	3,328	3,107

### 4. 운용자산규모

(2007년 9월 30일 현재 기준, 억원)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	총계
수탁고	23,227	1,540	2,972	5				891		28,635

\*투자일임재산을 제외합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07년 9월 30일 현재 기준, 억원)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동투자신탁 제외)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김동일	1962년생	CIO	97개	32,704	삼성생명(1987-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틴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담당이사(2001-현재)	팀공동운용
유재홍	1970년생	부장	97개	32,704	동원투자신탁운용(1998-2002) 당사 채권운용팀(2002-현재)	팀공동운용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 운용전문인력으로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책임운용인력

(2007년 12월 31일 현재)

펀드 매니저	Frederico Sampaio
운용 자산규모	USD123.34mil
과거 운용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FA</li> <li>-14년의 운용경력 (Rio Bravo Investimentos, Fundação Petros 등)</li> <li>-BA &amp; MA in Economics from PUC-RJ(Pontifícia Universidade Católica do Rio de Janeiro)</li> </ul>

**Janeiro)**

※ 상기인이 모두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 II. 판매회사

### 1. 판매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한국씨티은행	서울특별시 종구 다동 39 번지 (전화번호: 1588-5753)	<a href="http://www.citibank.co.kr">www.citibank.co.kr</a> 참조
외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 가 181(전화번호:1544-3000)	<a href="http://www.keb.co.kr">www.keb.co.kr</a> 참조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종구 을지로 1 가 101-1(전화번호:1588-1111)	<a href="http://www.hanabank.com">www.hanabank.com</a> 참조
대신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 (전화번호: 1588-4488)	<a href="http://www.daishin.co.kr">www.daishin.co.kr</a> 참조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 파이낸스 센터 29 층 (전화번호:02-3707-0400)	설립일:1992.7.8 판매회사등록: 2000년 9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 2. 주요 업무

#### (1) 주요 업무

- 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업무
- 나.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업무
- 다. 간접투자증권의 교부 업무
- 라.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업무
- 마.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관련 업무
- 바. 대고객 상담 및 약관, 투자설명서 교부 등 부수업무 및 그 외 판매행위준칙 등에 해당하는 내용

#### (판매행위준칙 등)

- (1)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①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②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③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④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⑤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2) 판매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3)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6) 자산운용협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2) 의무 및 책임

- 가.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나.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III. 수탁회사

#### 1. 수탁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봉래동 1-25 (대표전화 02-2004-0000)
회사연혁	1984년 서울지점 설립 1986년 Marine Midland Bank 서울지점 설립 1998년 11월 개인금융업무 시작 2000년 01월 개인금융 서울지점 개설

#### 2. 주요 업무

##### (1) 주요 업무

-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마.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바.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사.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아.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의무 및 책임

- 가.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 123 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3) 업무의 위탁

법 제 176 조 및 법시행령 제 164 조에 의거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며,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자에게 있습니다.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명	A-Brain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번지 굿모닝 타워 19 층, (우)150-712 (대표전화 02-3770-4450)
회사연혁	1999년 11월 3일 설립 2000년 11월 2일 등록

### 2. 주요 업무

#### (1) 주요 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의무 및 책임

- 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V. 채권평가회사

###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 층 (대표전화 3215-1400)
회사연혁	2000년 6월 20일 설립 2000년 6월 29일 등록
회사명	한국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 층 (대표전화 399-3350)
회사연혁	2000년 5월 29일 설립 2000년 7월 1일 등록

###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

## VI.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수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수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2. 잔여재산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투자재산명세서/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의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www.amak.or.kr](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공시에 관한 사항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부터 일정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 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법시행령 제 8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 월에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 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 · 수탁회사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공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④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⑤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⑦ 모두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⑧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용어	내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 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b>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b>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b>자산유동화증권</b>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조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b>전환사채</b>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b>종류형(간접투자기구)</b>	일반적으로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b>주식워런트</b>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b>주식형(간접투자기구)</b>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b>증권투자신탁</b>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b>추가형(간접투자기구)</b>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b>판매수수료</b>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b>해지</b>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b>환매</b>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환매수수료</b>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b>환매조건부채권</b>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b>환해지</b>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프랭클린 브라질 플러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판매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_\_\_\_\_  
(환율변동 위험을 포함한 그 주요내용을)\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